

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세부지침' 마련

- 햄, 소시지, 베이컨류 포함 대폭 확대 -

정부는 일부 육가공제품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로 추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관련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농수산물은 현행 63개에서 227개로, 가공품은 30개에서 54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부에서는 9월 25일 고시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1995-81호)'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료 원산지 표시제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육가공제품의 경우 가공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사용하는 현시점에서, 일일이 가공품에 여러 나라의 원산지를 나열표시하므로 소비자가 제품 전체를 수입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와 포장지의 교체로 인한 업체들의 가중부담으로 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햄, 소시지, 베이컨류 등을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의 사전준비 및 적응과 기존 포장재의 소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 농수산물일 경우에는 '국산'이라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는 원산지(생산지) 국명과 원료함량 및 배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의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료의 공급처가 빈번히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서 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특정 원료를 3개국 이상 국가에서 수입하여 동시 사용함으로써 원료의 생산국명을 모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둘째, 원료의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료의 공급처(생산국)가 빈번하게 바뀌어 생산국명을 모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최근 3년 이내에 원산지 또는 함량 배합비율이 연 평균 3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 연 3회 이상 원산지표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가공품 생산업체로서 평균 4개월 동안에 1회 이상 원산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셋째,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도 생산국명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원료구입선 및 배합비율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포장재 제작이 어려운 경우 다만,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표 1〉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현황

	기 지정 품목(A)	추가품목(B)	A+B
	30개류	24품목	54품목류
과자류	잼류(1)	식빵(1)	2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류(3)	분유류, 치즈, 버터류(3)	6
식육제품		햄, 소시지, 베이컨류(3)	3
통·병조림	(농산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자두, 찬다래, 토마토, 딸기, 밤 (수산물)고등어, 전갱이, 삼치, 정어리, 꽁치, 다랑어, 연어, 패류	-	2
두부류	묵류(포장된 것)(1)	두부(포장된 것)(1)	2
식용유지	참기름, 들기름(2)	대두유, 옥수수유, 낙화생유(3)	5
면류		국수, 당면, 라면(3)	3
다류	침출차(녹차, 홍차, 우롱차, 보리차, 결명자차) 추출차(침차, 구기자차, 당귀차, 두충차, 오가피차, 오미자차, 영지차, 생강차) 분말차(땅콩차, 울무차)		5
청량음료	과실차(유자차)(4)	대추차(1)	
인삼제	과실·채소음료(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자두, 찬다래, 토마토, 딸기)(1)	채소(1)	2
조미식품	백삼, 홍삼, 태극삼, 농축인삼류, 인삼분말, 인삼차류, 당침인삼(7)	-	7
절임식품	절임식품(마늘, 양파)(1)	간장, 된장, 고추장, 케찹(4)	4
단순가공	땅콩가공품, 견과류가공품, 과실·채소류가공품(고춧가루 포함), 곡물가공품(쌀, 찹쌀, 보리, 팥, 녹두), 특용 기호작물 가공품, 육포류, 조미어포류(8)	오이, 무(2) 밀, 조미김(2)	3 10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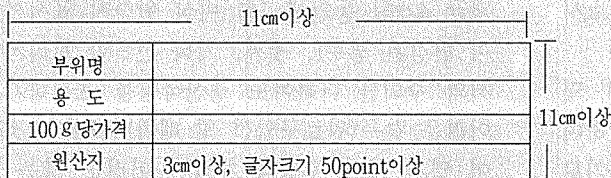
〈고기를 판매할 때〉

- 포장육은 포장용기에
- 덩어리고기는 다음과 같은 부위표지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원료로 사용할 때〉

- 가공식품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근거: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에서 특정성분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혼합특정성분 원료 중 대표적인 원료 두가지를 표시토록 하고, 주원료는 관계 규정에 의해 표시토록 했으며 원료의 배합비율에 있어서 그 증감범위가 20% 이내인 경우의 적용기준은 특정원료의 총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표시방법은 국별 함유비율을 표시하거나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쇠고기나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때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